

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선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5.

발 의 자 : 백선희 · 박희승 · 이해민
김선민 · 황명선 · 차규근
황운하 · 정준호 · 김재원
정춘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·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·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회원에 대한 취업·창업 지원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사업)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·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3. (생 략) ② (생 략)	제14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<u>회원에 대한 취업 · 창업 지원 사업</u>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